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1 년 10 월 08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주식회사 BNK투자증권
(영문명) BNK Securities.co.,Ltd.
(홈페이지) <http://www.bnkfn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259-4번지 부산은행부전동지점 4층
(전 화) 051-669-8000

대 표 이 사 : 김 병 영

담 당 책 임 자 : (직 책) 부 장
(성 명) 장 대 현 (전 화) 02-2115-5122

작 성 자 : (직 책) 차 장
(성 명) 박 지 은 (전 화) 02-2071-7623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1-4호)

형사처벌을 받은 경우

1. 형사처벌 내용 및 사유	(1) 대상자: (주)비엔케이투자증권 (2) 형사처벌 내용: 벌금 5,000만원 (3) 사유: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
2. 형사처벌 근거법령	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3조 제1항 제5호, 제176조 제2항 제1호
3. 형사처벌 일자	2021. 10. 8
4. 확인일자	2021 .10. 8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제2항제1호라목, 제2호나목, 제3호나목 또는 제4호나목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영위하는 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시한다.
- 주2) "형사처벌 내용 및 사유"란에는 대상자[법인명 또는 임직원인 경우 직급(직위)까지만 기재]를 포함한 처벌 관련 상세 내용을 기재한다.
- 주3) 본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상기 기재사항 외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